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6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한병도ㆍ이성윤ㆍ박희승

박정현 · 강경숙 · 김병기

임오경 · 서미화 · 부승찬

이워택 • 박지혜 의위

(11인)

제안이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무엇보다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금전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육아·양육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아동수 당의 지급 연령 및 금액을 확대하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감소시 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제2호 신설).
- 나.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금액을 유지하되, 신설되는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함(안 제4조제1항).
-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라. 아동 보호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아동수당 신청이 각하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해당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 인 때에는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신청 각하 또는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7조제6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후단 신설).
- 마.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수급아 동 당사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신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제1호에도"로 한다.

- 1. 8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만원
-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매월 20만원

제5조제1항 중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를 "아동(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한한다) 및 아동의 보호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전단 중 "8세 미만 아동과"를 "아동과"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8세 미만 아동과"를 "아동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의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신청 각하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8세"를 "18세"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게"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8세 미만의 아동: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수급아동에게 지급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급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그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의2. "아동"이란 「아동복지</u>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
	<u>을 말한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u>8세 미</u>	지급액) ① <u>다음</u>
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u>각 호에 따른 금액을</u>
지급한다.	
<u><신 설></u>	<u>1. 8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만</u>
	<u>원</u>
<u><신 설></u>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u>매월 20만원</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	⑤ 제1항제1호에도
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 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하다.
- ③・④ (생 략)
- 제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저 (생 략)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은 8세 미만

아동(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
동에 한한다) 및 아동의 보호
<u> 자에게</u>
,
2
<u>아동과</u>
③・④ (현행과 같음)
세7조(조사·질문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아동과

<u>아동과</u> 그 보호자에 대한 주민 등록 주소지 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 용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생 략)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 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 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6
<u>이 경우 아동수당지급신</u>
청자의 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그 아동에게 아동
수당 지급 신청 각하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선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8 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 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 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 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 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 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 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 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 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 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② ~ ⑤ (생 략)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저 (생 략)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u>1</u> 8세
<u>다음 각 호에</u>
<u>따라</u>
1. 8세 미만의 아동: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
2.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수급아동에게 지급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현행과 같음)
2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 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 지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수급아동이 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그 아 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정지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생 략)